공적자금상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정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3823

발의연월일: 2024. 9. 9.

발 의 자:이정문・박홍배・박 정

조승래 • 이학영 • 이연희

이훈기 · 문진석 · 서영석

이인영 · 임광현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ESG(Environment, Social, Governance)투자는 사회적 책임을 금융시장에 도입하여, 투자 결정 단계에서 재무적 요소와 함께 환경·사회·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리스크를경감시키고 지속가능한 수익 창출을 목표로 하는 투자 원칙임.

이러한 사회적 책임투자는 2005년에 UN에서 6가지 투자 원칙(UN PRI)을 천명한 이후 서명을 통해 세계 각국 및 기업에 확산되는 추세에 있고, 국내에서는 국민연금이 법 개정을 통해 2015년부터 도입하고 있으며, 해외 국부펀드 중에서 노르웨이의 정부연기금(GPFG)등 주요연기금에서 도입하고 있음.

이에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경우 환경·사회· 지배구조 요소 등 사회책임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금 의 장기적인 수익률을 제고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4조제6항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공적자금상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적자금상환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7항(종전의 제6항) 중 "제5항까지에서"를 "제6항까지에서"로 한다.

⑥ 금융위원회는 제5항제1호에 따라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 ·사회·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기금의 운용・관리) ① ~	제4조(기금의 운용・관리) ① ~
⑤ (생 략)	⑤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⑥ 금융위원회는 제5항제1호에
	따라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경
	<u>우에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</u>
	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
	<u>과 관련한 환경·사회·지배구</u>
	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
	<u>다.</u>
<u>⑥</u> 제1항부터 <u>제5항까지에서</u>	<u>⑦</u> <u>제6항까지에서</u>
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	
•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	
령령으로 정한다.	